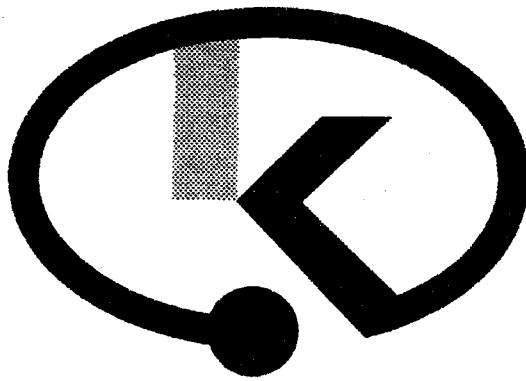


# 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안내

## 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전기적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용품의 안전기준방법 및 절차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선진화 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비교		비 고
	종전의 내용(형식승인)	개정 내용(안전인증)	
적용시기	1974. 01. 04 - 2000. 06. 30	2000. 07. 01 부터	
법률적용	강제법	강제법	
인증기관	정부(기술표준원)	민간(안전인증기관)	KETI
인증방법	형식승인(TYPE)	모델(Model)	
시험기관	지정시험기관(KETI)	KETI 및 KETI의 지정시험기관	
대상품목	강제대상품목	강제대상품목 및 임의품목	
인증범위	절연전선등 211개의 1종 및 인터폰 등 89개의 2종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172개외 저전압 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용품	
시험기준	전기용품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국제기준)	당분간 병행
인증대상	제조사 및 수입판매자	제조사	
공장검사	정부(기술표준원)	민간(안전인증기관)	
사후관리	정부(기술표준원)	민간(안전인증기관) 및 정부	
제품분류	선류를 포함한 16개 제품군으로 분류	전선 및 전원코드를 포함한 11개 제품군으로 분류	
인증절차	시험기관과 승인가관의 이원화	안전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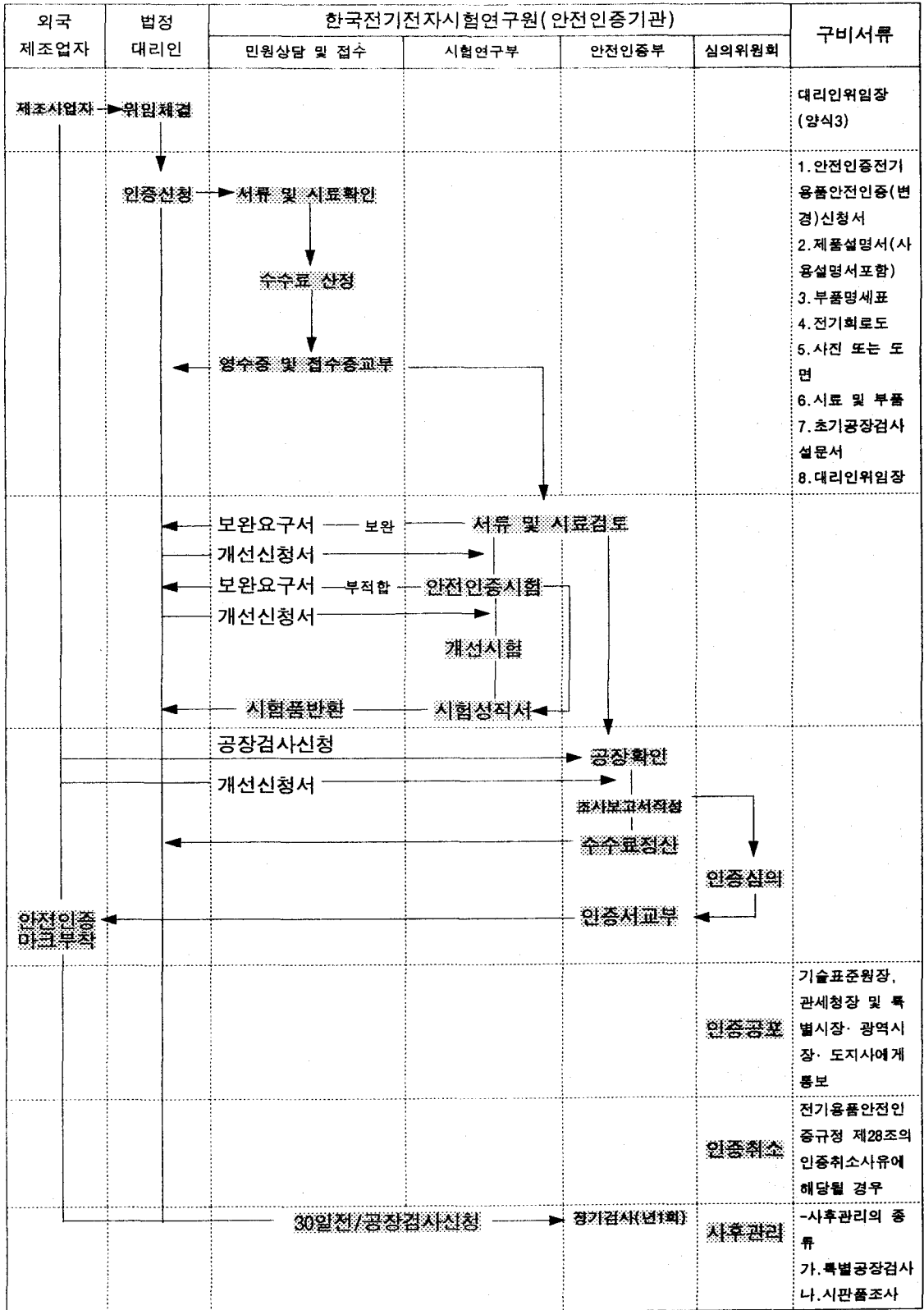
\* KETI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영문약칭임.

# 인증절차

## ◎국내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국내 제조업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기관)				구비서류
	민원상담 및 접수	시험연구부	안전인증부	심의위원회	
인증신청	서류 및 시료확인 ↓ 수수료 신청 ↓ 영수증 및 접수증교부				1. 안전인증전기용품 안전인증(변경)신청서 2.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포함) 3. 부품명세표 4. 전기회로도 5. 사진 또는 도면 6. 시료 및 부품 7. 초기공장검사설문서
보완요구서 개선신청서 보완요구서 개선신청서	보완 ↓ 부적합	서류 및 시료검토 ↓ 안전인증시험 ↓ 개선시험 ↓ 시험성적서	시험फल반환		
공장검사신청 개선신청서			공장확인 ↓ 조사보고서작성 ↓ 수수료정산		
안전인증 미완료			인증서교부	인증심의	
				인증공포	기술표준원장, 관세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
				인증취소	전기용품안전인증규정 제28조의 인증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30일전/공장검사신청		정기검사(년1회)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종류 가. 특별공장검사 나. 시판품조사

◎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 신청서 작성 방법

(작성 예1) 기본모델만을 신청하는 경우

### 1. 제품설명

(1) 전기용품의 명칭 및 모델명

구 분	모 델 명	정 격	기 타
기본모델	KNJ-1480	220V, 60Hz, 21VA	-

(2) 제품의 설명

본제품은 외부전원자크를 가진 휴대용소형텔레비전등의 기기에 직류저전압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전원입력코오드, 전원변압기, 정류기판, 출력코오드 및 출력플러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합성수지제의 케이스 수납되어있다.

전원입력용코오드에 변압기의 1차측 단자가 직접 납땜접속되어 있으며 상용전원전압을 전원변압기로 강압시켜 변압기의 2차전압을 실리콘다이오드, 전해콘덴서로 정류평활된 직류전압을 출력플러그로 출력한다. 회로보호로 변압기의 1차권선에 접속되어 있는 온도휴즈(130℃), 2차측의 정류기판에 정류휴즈(5A)가 설치되어 있으며, 2차측 단락 및 전자부품의 고장등의 이상시에 회로를 차단하여 보호한다. 전원입력코오드에 부착된 꽂음플러그를 벽 콘센트에 꽂음으로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일체형의 출력코오드이다.

(3) 성능 또는 정격

정격입력전압 220V

정격주파수 60Hz

입력측의 정격용량 21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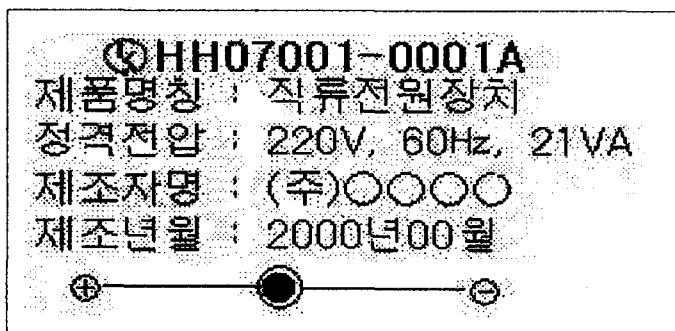
정격2차직류전압 DC14V

정격2차직류전류 800mA

회로보호장치(온도휴즈) : 130℃ , 2A, 250V

(정류휴즈) : 125V, 5A

(4) 표시사항



(5) 주의표시사항

- 1) 본 제품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2) 본 제품은 실내에 서만 사용하며 고온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3) 정격전류용량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제품명 : 직류전원장치(KNJ-1480)

(작성 예1) 파생모델만을 신청하는 경우

1. 제품설명

(1) 전기용품의 명칭 및 모델명

구 분	모 델 명	정 격	기본모델과의차이점
기본모델	KNJ-1470	220V, 60Hz, 21VA	-
파생모델	KNJ-1841	220V, 60Hz, 21VA	외함 수지물의 변경

(2) 제품의 설명

본제품은 외부전원작크를 가진 휴대용소형텔레비전등의 기기에 직류저전압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전원입력코오드, 전원변압기, 정류기판, 출력코오드 및 출력플러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합성수지제의 케이스 수납되어있다.

전원입력코오드에 변압기의 1차측 단자가 직접 납땜접속되어 있으며 상용전원전압을 전원변압기로 강압시켜 변압기의 2차전압을 실리콘다이오드, 전해콘덴사로 정류평활된 직류전압을 출력플러그로 출력한다. 회로보호로 변압기의 1차권선에 접속되어 있는 온도퓨즈(130℃), 2차측의 정류기판에

정류퓨즈(5A)가 설치되어 있으며, 2차측 단락 및 전자부품의 고장등의 이상시에 회로를 차단하여 보호한다.

전원입력코오드에 부착된 꽂음플러그를 벽콘센트에 꽂음으로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일체형의 출력코오드이다.

(3) 성능 또는 정격

정격입력전압 220V

정격주파수 60Hz

입력측의 정격용량 21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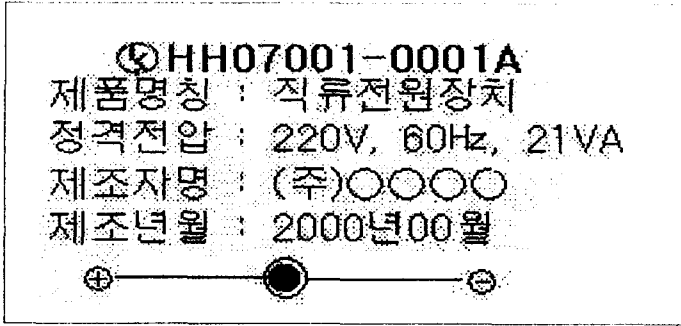
정격2차직류전압 DC14V

정격2차직류전류 800mA

회로보호장치(온도퓨즈) : 130℃ , 2A, 250V

(전류퓨즈) : 125V, 5A

(4) 표시사항



(5) 주의표시사항

- 1) 본 제품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2) 본 제품은 실내에 서만 사용하며 고온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3) 정격전류용량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제품명 : 직류전원장치(KNJ-1481)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분류방법의 사용예

구 분	범 위
1.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사이에 사용되는 2중절연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 광접합소자(포터커플러) 라.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Y 축전지(커패시터)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된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체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승방지 장치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3. 과부하 또는 장시간전류를 통할 시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된 부품	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네틱클러치
4. 전기전, 열적, 기계적, 화학적 위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질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나. 회로내에서 화재발생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려된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 기본모델과 파생모델과의 구분방법은 인증된 기본모델이 상기표 좌란의 구분마다에 우란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은 모델을 파생모델이라하며 상기의 구분에 따른 범위와 상이한 제품은 기본모델로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규정

##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품의 설계, 기능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제품에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2) "기본모델"이라 함은 안전인증전기용품중 전기적인 기본회로, 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제품군중 최초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1호의 모델을 말한다.
- (3) "파생모델"이라 함은 제2호에 의한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동일하고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모델로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모양 등이 변경된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000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3조)에서 정한 제품(이하 "지정품목")과 지정품목 이외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000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중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하 "임의품목")으로 한다.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적용시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권한) 안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원장은 연구를 대표하고 각 부서를 지휘, 관리감독한다.
- (2) 안전인증부장은 안전인증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안전인증업무중 시험업무는 시험연구부장이 관장한다.

## 제 2 장 인증신청전 서비스

제5조(업무상당) 고객이 연구원의 안전인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담을 요구한 경우 민원담당 직원은 상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자의 요구사항과 연구원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상담해야 한다.

- 가.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 나. 인증에 관한 신청자의 질의사항

제6조(신청을 위한 사전격적) 민원담당 직원은 고객을 위하여 신청자의 인증제품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청을 위한 사전견적을 한다.

가. 시료 및 부품수량표 작성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료 및 부품을 파악한 후 시료 및 부품수량표[양식 1]를 작성한다.

나. 안전인증수수료내역(청구서) 작성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산정하여 안전인증수수료내역(청구서)[양식 2]을 작성한다

제7조(대리인 지정신청)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신청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대리인위임장[양식 3]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인증 시료확인)

(1)외국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안전인증 시료 확인신청서 [양식 4]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연구원은 안전인증 시료확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안전인증시료 확인서 [양식 5]를 발급한다.

### 제 3 장 인증신청

제9조(신청서 작성)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변경) 신청서 [양식 6] 또는 전기용품 임의인증(변경)신청서 [양식 7]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와 해당제품 및 관련부품을 구비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품설명(사용설명서 포함)

나.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부품명세표 및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등급)의 명세표(제조회사, 모델, 정격 또는 전기적특성, 인증규격)

다. 전기회로도

라. 사진 또는 도면

마. 대리인 증빙서류(외국제조업자에 한함)

바. 기타 필요한 사항(안전인증의 변경신청내용, 위탁시험기관의 성적서 등)

제10조(설문서 작성) 안전인증 신청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초기공장검사설문서[양식 8]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한다. 다만, 동일제품분류의 모델이 공장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설문서 작성이 불필요하다.

제11조(시료 및 부품)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부표1) 시료 및 부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1)신청자는 연구원 업무규정에 따라 다음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가. 공장확인 수수료 및 출장비(해당되는 경우)

나. 인증서 발급수수료

다. 시험 수수료

라. 기타 필요한 수수료

(2)연구원은 수수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법정 영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13조(접수증교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민원 담당자는 접수증(시료보관증 및 반출증) [양식 9]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안전인증 변경신청)

(1)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래와 같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이미 인증된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나.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자, 상호, 성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다.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권리부품의 복수등재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2)신청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시료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신청자는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공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운영요령

1. (목적) 본 요령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와 연구원 안전인증 업무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를 기타 필요한 표시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안전인증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는 [별표1]과 같으며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기준에 따른다.
3. (표시시기) 국내제품은 출고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은 통관전에 하여야 한다.
4. (표시방법)
  - 4.1 제품명칭의 표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4.2 안전인증마크는 [별표2]와 같으며 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4.3 안전인증의 표시는 당해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구조상 당해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
  - 4.4 특정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1)전선중에서
      - (1)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600V 고무절연전선, 고무코오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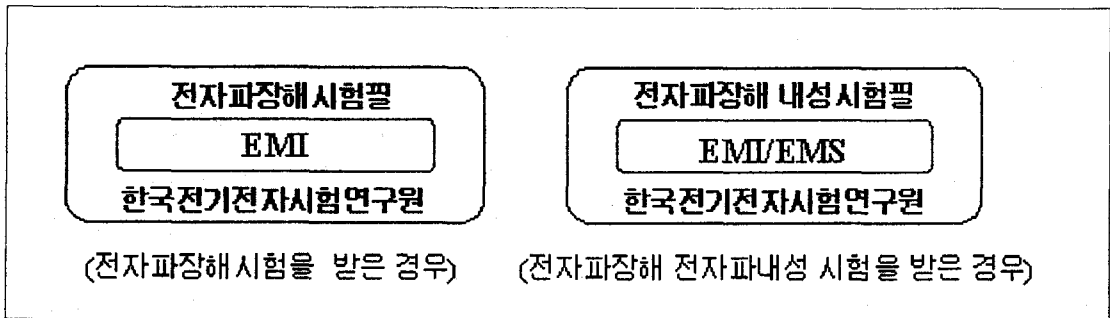
표시할 것.

다만, 코오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 번호 및 정격전압(내온전선을 제외한다.)을 생략할 수 있다.

(2)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2)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매 제품마다 표시할 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 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 제품마다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인증 번호중 지역번호와 제조구분번호는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4.5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 있어서는 EMI 또는 EMI/EMS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이 있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4.6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제품사용설명서 작성 표준용어"를 참고 할 수 있다.

5. (아프터서비스표시) "전기용품의 표시"사항란에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6. (부칙) 이 요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전기용품의 표시(제2항관련)

1. 안전인증의 마크
2. 안전인증 번호
3. 제품명칭
4. 모델명
5. 정격전압
6. 제조업체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추가 표시)
7.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 의 기호
8. 단시간 정격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9.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10. A/S를 위한 전화번호 또는 소재지등의 연락처
11. 안전기준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별표2] 안전인증마크의 표시(제4.2항 관련)**

1. 표시방법 및 도형



2. 참고사항

- 가. 안전인증마크의 도형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며 [별표3]에서 정한 표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안전인증의 표시는 당해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 라. 안전인증의 표시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안전인증면제에 대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 이라는 표시를 한다.

<b>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없 음
제 조 자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전화: )		
	본 사 주 소	사업자번호		
	제조공장주소	사업자번호		
대 리 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전화: )		
	주 소	사업자번호		
전기용품의 명칭				
기 본 모 델 명				
정 격				
파 생 모 델 명				
적용 안전기준		전기용품 기술기준 ?	안전기준(국제기준 준용) ?	
신 청 구 분		신 규 ?	변 경 ?	
제 조 구 분		국 내 ?	수 입 ?	
변경신청	변경구분	파생모델등록 ?	부품등록 ?	내용변경 ?
	인증서번호			
	증빙서류	붙임		
공장확인 유무		유 ?	무 ?	
수 수 료		₩ (부가세 별도)(안전인증수수료내역 첨부)		
<p>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및 연구원 안전인증 업무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귀하</p>				

(뒷면계속)

## 구비서류 및 시료의 수량

### 1. 구 비 서 류

- ①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포함)
- ② 부품 명세표
- ③ 전기 회로도
- ④ 사진 또는 구조도
- ⑤ 대리인 증빙서류(외국제조자에 한함)
- ⑥ 변경신청 내용 및 증빙 서류(변경 신청시) 등

### 2. 시료의 수량

시험품 1대 (EMC가 적용되는 경우는 2대, 시험품이 부품인 경우 와 전구류인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안전기준에 명시된 부품

	? 반납    ? 폐기    ? 발송    ? 해당없음
시험시료 처리	(발송인 경우) 주 소 : 인수자 :

**\* 신청안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업무규정을 준수한다.
2.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3. 시험에 따른 시료의 분해, 파손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인증기관의 직원이 초기공장확인 및 정기공장검사를 위한 방문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 ① 정기공장검사는 인증서 발급후 년 1회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② 공장검사는 사전에 인증기관이 통보해 드립니다.
5. 안전인증기관의 신청보완 요구 시 보완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한다.
6. 안전인증서 발급 후 안전인증 전기용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7. 인증이 허가된 인증범위의 측면에서만 인증에 대한 주장을한다.
8. 인증기관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제품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9. 문서, 소책자 및 광고물과 같은 통신매체로 제품 인증을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 신청자는 상기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신 경우에 신청인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전기용품 임의인증(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없 음
제 조 자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전화: )		
	본 사 주 소	사업자번호		
대 리 인	제 조 공 장 주 소	사업자번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전화: )		
주 소		사업자번호		
전기용품의 명칭				
기 본 모 델 명				
정 격				
파 생 모 델 명				
적용 안전기준		전기용품 기술기준 ?	안전기준(국제기준 준용) ?	
신 청 구 분		신 규 ?	변 경 ?	
제 조 구 분		국 내 ?	수 입 ?	
변경신청	변경구분	파생모델등록 ?	부품등록 ?	내용변경 ?
	인증서번호			
	증빙서류	붙임		
공장확인 유무		유 ?	무 ?	
수 수 료		₩ (부가세 별도)(안전인증수수료내역 첨부)		
<p>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업무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용품의 임의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귀하</p>				

(뒷면계속)



## 구비서류 및 시료의 수량

### 1. 구 비 서 류

- ①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포함)
- ② 부품 명세표
- ③ 전기 회로도
- ④ 사진 또는 구조도
- ⑤ 대리인 증빙서류(외국제조자에 한함)
- ⑥ 변경신청 내용 및 증빙 서류(변경 신청시) 등

### 2. 시료의 수량

시험품 1대 (EMC가 적용되는 경우는 2대, 시험품이 부품인 경우 와 전구류인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안전기준에 명시된 부품

	? 반납    ? 폐기    ? 발송    ? 해당없음
시험시료 처리	(발송인 경우) 주 소 : 인수자 :

\* 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업무규정을 준수한다.
2.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3. 시험에 따른 시료의 분해, 파손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인증기관의 직원이 초기공장확인 및 정기공장검사를 위한 방문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 ① 정기공장검사는 인증서 발급후 년 1회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② 공장검사는 사전에 인증기관이 통보해 드립니다.
5. 안전인증기관의 신청보완 요구 시 보완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한다.
6. 안전인증서 발급 후 안전인증 전기용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7. 인증이 허가된 인증범위의 측면에서만 인증에 대한 주장을한다.
8. 인증기관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제품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9. 문서, 소책자 및 광고물과 같은 통신매체로 제품 인증을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 신청자는 상기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신 경우에 신청인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 개정이유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1999. 9. 7, 법률 제60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기준 등에 위반된 전기용품에 대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전기용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2조).
- 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의하여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국·공립검사기관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기준의 제·개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를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그 기간내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변경·삭제한 경우 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에 당해 전기용품의 위해여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모델
2. 상호·로트번호 및 제조일자(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
3. 명령이행책임자
4. 사유
5. 최초이행일 및 완료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사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안전인증에 관하여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기준을 포함한다)의 고시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질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0조(위임·위탁업무의 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의 면제
- ②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검정”을 “안전인증”으로 한다.
-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보 고 사 항 (제4조관련)**

보고의무자	보 고 사 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모델·제조수량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자체검사기록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장소 및 제조위탁처와 제조에 사용된 부분품의 구입처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1. 설비 및 공사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모델·제조일자·구입처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용도 및 사용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1. 부분품으로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모델·구매량 및 구입처 2. 완성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법 제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	1.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모델·수입수량·제조업체 및 제조국가 2. 수입·판매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모델·판매수량 및 판매처

[별표 2]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금액(제11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1호	400만원
2.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18조제2호	200만원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18조제3호	300만원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4호	300만원

※ 비고 :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법률 전문게재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1條(目的) 이 법은 電氣用品의 生産·組立·加工, 販賣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用品”이라 함은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電氣設備에 接續하여 사용되는 機械·器具·材料 또는 그 部分品이나 附屬品을 말한다.
2. “安全認證”이라 함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用品製造業者가 販賣를 위하여 生産·組立 또는 加工(이하 “製造”라 한다)한 電氣用品을 試驗하고 製造·檢査設備 등 生産體制를 評價하여 電氣用品에 대한 安全性을 認證하는 것을 말한다.
3.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라 함은 構造·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用品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法人 또는 團體는 認證審査員·試驗設備 등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4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取消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法人 또는 團體(이하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때

3. 正當한 사유없이 安全認證을 행하지 아니한 때
4.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때
6. 第5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安全認證 등)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이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라 한다)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研究·開發 또는 輸出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등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와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外國의 安全認證機關에서 安全認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과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에는 安全認證을 행하여야 한다.

③安全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경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계속하여 安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의 製造工場에 있거나 流通중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定期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⑤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安全認證機關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試驗을 실시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하여 試驗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⑦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등의 檢査基準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檢査·확인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방법·節次 기타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安全認證의 표시등)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의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하여서는 아니된다.

1.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事業者
2. 電氣事業法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3.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業者
4.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 또는 附屬品으로 사용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者(이하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

第7條(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 등의 금지) ①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6條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과기·收去命令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때에는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과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과기 또는 收去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의 부담으로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직접 과기 또는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과기 또는 收去로는 그 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言論媒體 등을 통한 사실의 公表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交換·還拂·修理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과기 또는 收去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條(安全認證의 取消) ①安全認證機關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을 받은 때
2.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製造된 때
3.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7.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
8.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②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이 取消된 者에 대하여는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기타 電氣用品의 安全認證)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電氣用品(이하 “기타 電氣用品”이라 한다)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기타 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을 수 있다. ②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고자 하는 기타 電氣用品이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1. 安全認證機關이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安全基準(승인을 얻은 安全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國際規格)에 적합한 때
2. 기타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가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 ④기타 電氣用品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관한 業務規程을 정할 수 있다.

第11條(보고 및 檢査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및 第6條第3項 各號의 者에게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販賣·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工場·事業場·店鋪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電氣用品의 製造 및 檢査設備·電氣用品·書類·帳簿 및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定期檢査·自體檢査 등에 관한 사항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과기·收去命令, 公表 및 交換·還拂·修理命令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및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2條(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條(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標準院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相關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한 檢査 또는 확인에 관한 業務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檢査 및 質問 등에 관한 業務

③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第14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安全認證機關 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고 安全認證을 행한 者

2.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을 행한 者

3. 第4條第1項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후 또는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者

5.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한 者

6.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행한 者

8.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한 者

第1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한 者

3.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한 者

4. 第8條第1項 및 第3項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6.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製造·販賣한 者

第1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 및 第1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 부터 30日 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1種電氣用品의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1種電氣用品은 그 型式承認의 有效期間까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으로 본다.

第3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5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電氣用品

②騒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의의 部分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5를 削除한다.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改正理由

現在의 電氣用品의 安全管理가 國際的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政府에 의한 型式承認制度를 民間機構에 의한 安全認證制度로 轉換함으로써 電氣用品의 製造 및 安全管理를 先進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電氣用品製造業者가 製造한 電氣用品과 工場 등 그 생산체제를 試驗·評價하여 당해 電氣用品에 대한 安全性을 認證하는 업무를 행하는 安全認證機關을 産業資源部長官이 指定할 수 있도록 함(案 第3條).
- 나. 종전에는 電氣用品중 火災·감전 등의 위험 또는 障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電氣用品에 대하여 政府의 型式承認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製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機關의 安全認證을 받아 製造하도록 하고, 火災·감전 등의 위험 또는 障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電氣用品에 대하여는 自律적으로 安全認證을 받을 수 있도록 함(案 第5條 및 第10條).
- 다. 安全認證을 받은 電氣用品은 당해 製品·용기 또는 포장에 安全認證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輸入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표시가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목적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하지 못하도록 하며, 電氣事業者 등은 安全認證의 표시가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案 第6條 및 第7條).
- 라. 安全認證을 받아야 하는 電氣用品이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電氣用品의 개선·과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言論媒體를 통한 사실의 公表와 당해 電氣用品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案 第8條).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개정이유

전기용품의 안전성 향상과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 및 동법시행령(2000. 6. 23, 법률 제16850호)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안전인증대상전기품을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전기용품 분류체계에 맞추어 제품을 분류함(안 제3조 및 별표 2).
- 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기용품제조업자 등은 안전인증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및 제품특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확인한 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수출전용제품, 한국산업규격을 획득한 제품, 학교·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용 제품 또는 전시용 제품 등에 대하여는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지속적인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조업자의 공장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의 전기용품의 제품군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의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 등을 변경한 하나의 제품군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2.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제조업체명·모델·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3. 절연재질(온도특성 및 난연성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4. 전기회로도면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확인) ①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4.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5. 안전기준
6.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7.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발급대상(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인증의 변경) ①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



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 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서와 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인증시의 조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제11조(정기검사)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4.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여부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 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

제13조(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대상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ISO 17025)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안전인증의 표시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와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계획서 등)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제조연월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시·도지사는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전기용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안전인증시험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당해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모델(이하 “형식승인모델”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모델의 현황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수입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 및 제조국가를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제품명·형식승인번호·동일 형식번호에 포함되는 전체 모델명
4. 제조실적(수입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수입실적)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에 대한 현황을 2000년 8월 20일까지 관세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제3호관련)

구 분	범 위
<p>1.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p>	<p>가. 변압기(트랜스포머)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 광집합소자(포토커플러)                      라.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Y 축전기(캐패시터)</p>
<p>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p>	<p>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p>
<p>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p>	<p>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네틱러치</p>
<p>4. 전기적·열적·기계적·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p>	<p>가. 교류전압 30V 이상, 직류전압 60V 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나. 회로안에서 화재발생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p>

[별표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조관련)

안전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가. 전기용품의 인증업무를 주된 업무로 할 것
  - 나.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이하 “ISO”라 한다)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 다. 별표 2에 의한 제품분류중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제품분류별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 국제규격에 의한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 라. ISO 9000 인증기관에 준하는 자체품질시스템을 갖추고, ISO 9000 또는 한국표준화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할 것
  - 마.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가.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을 받을 것
  - 나.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별표 4]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관련)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4조제1항제1호	취 소			
2. 영업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제1항제3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4조제1항제4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전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제1항제5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전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제1항제6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전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5]

**안전인증 확인사항**(제7조제1항관련)

1.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의 확인

- 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와 당해 제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확인업무를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 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다. 신청제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라.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인증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인증번호의 부여기준**(제7조제2항관련)

1. 안전인증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A	D	0	1	0	0	1	-	0	0	0	1	A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가.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 나.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기타 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기도	H	제주도	P		
		북한	Q		

※ 비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휘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티,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태국,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등
2. 미주지역 :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치아, 우루과이, 미국, 베네수엘라 등
3. 유럽지역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유고슬라비아 등
4. 중동지역 :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5. 아프리카 지역 : 알제리, 앙골라,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 이디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등
6. 기타 지역 : 괌, 홍콩, 마카오, 대만, 지브랄타 등

다. 제품분류 코드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적용범위의 분류에 의한다.

제품분류	코드	제품분류	코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가정용 또는 업소용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캐패시터 또는 기타 교류용 전기기기	03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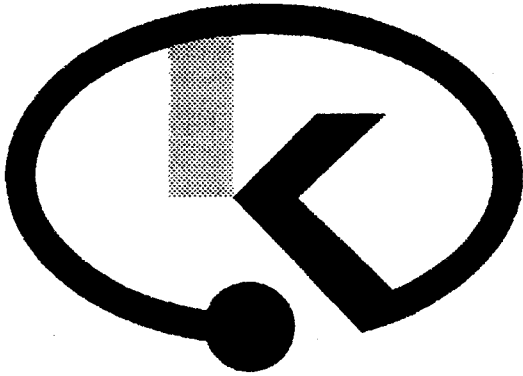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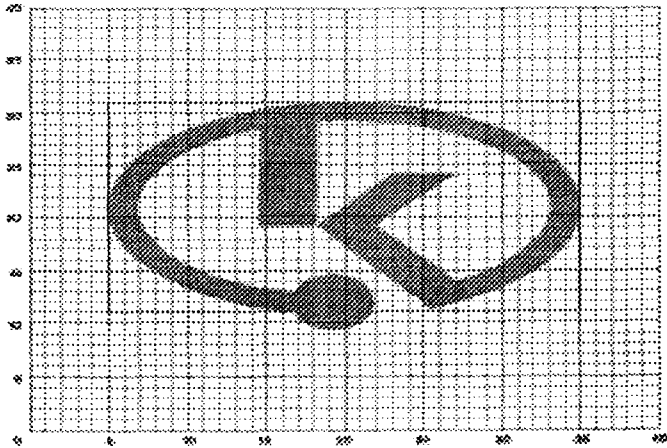


- 라.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 : 3자리
- 마. 연도별 끝자리 번호 : 1자리(예 : 2000년→0, 2001년→1, 2002년→2)
- 바.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의 일련번호 : 3자리
- 사. 기본모델의 변경신청에 따른 안전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최초수정부터 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번호의 사용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의 발급시에 기재하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표시에 사용한다.

**안전인증의 표시**



수수료(제15조관련)

구 분	수수료
1. 안전인증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안전인증서발급 : 60,000원</p> <p>나. 시험료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다. 공장확인(공장확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1개 공장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비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시에 안전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기관에 납부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 발급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내역을 문서로 발급한다.</p>
2. 안전인증의 변경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p> <p>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p>
3. 안전인증의 면제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당해 제품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p>

인증면제표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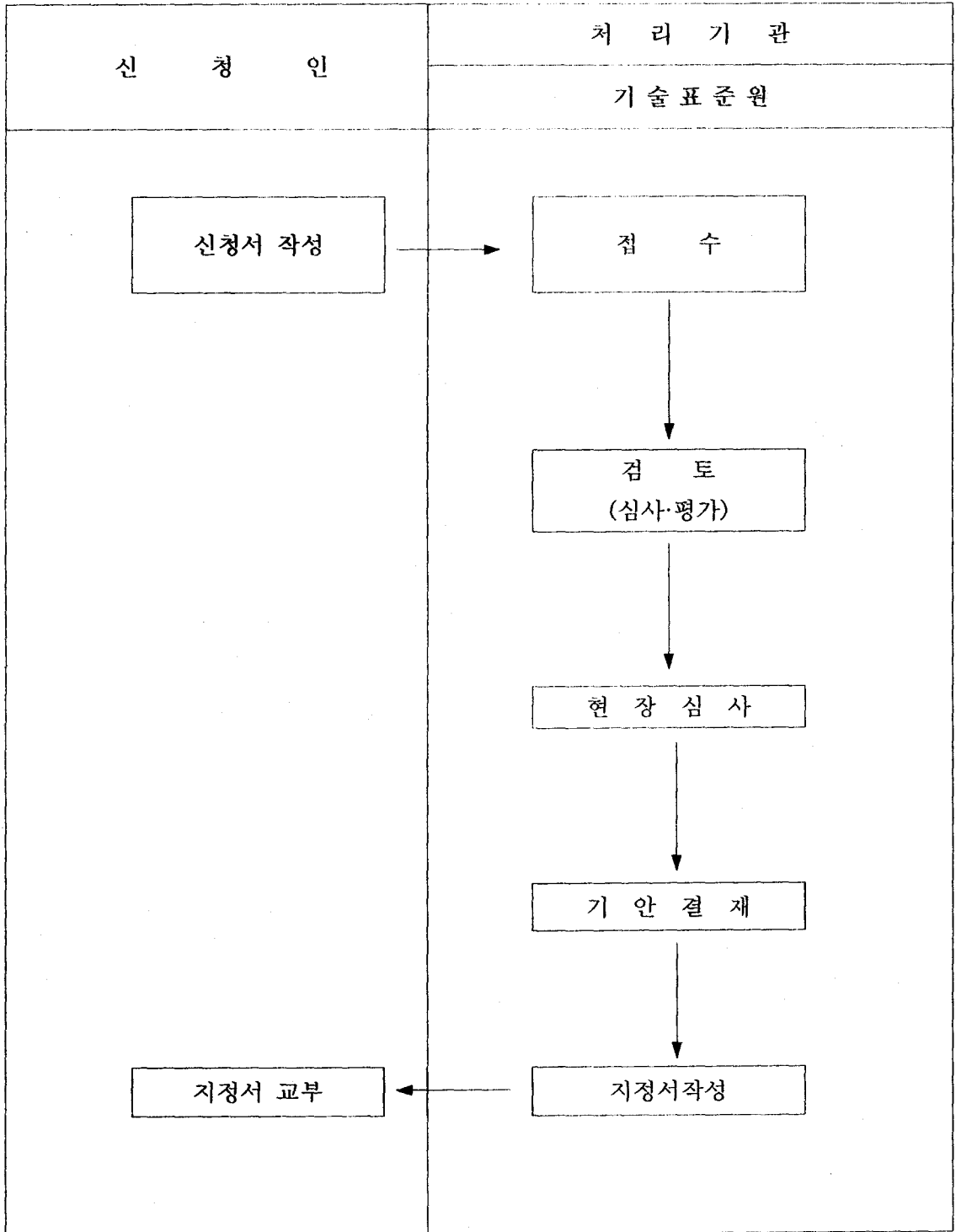
1. 안전인증표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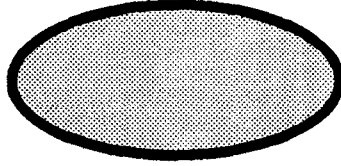
4. 정기검사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공장 1개소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한다.</p> <p>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p>
5. 기타	<p>가. 공장확인·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이나 정기검사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등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출장비를 계상한다.</p> <p>나. 국외의 공장확인·정기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인증기관이 별도로 산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p>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안전인증수행범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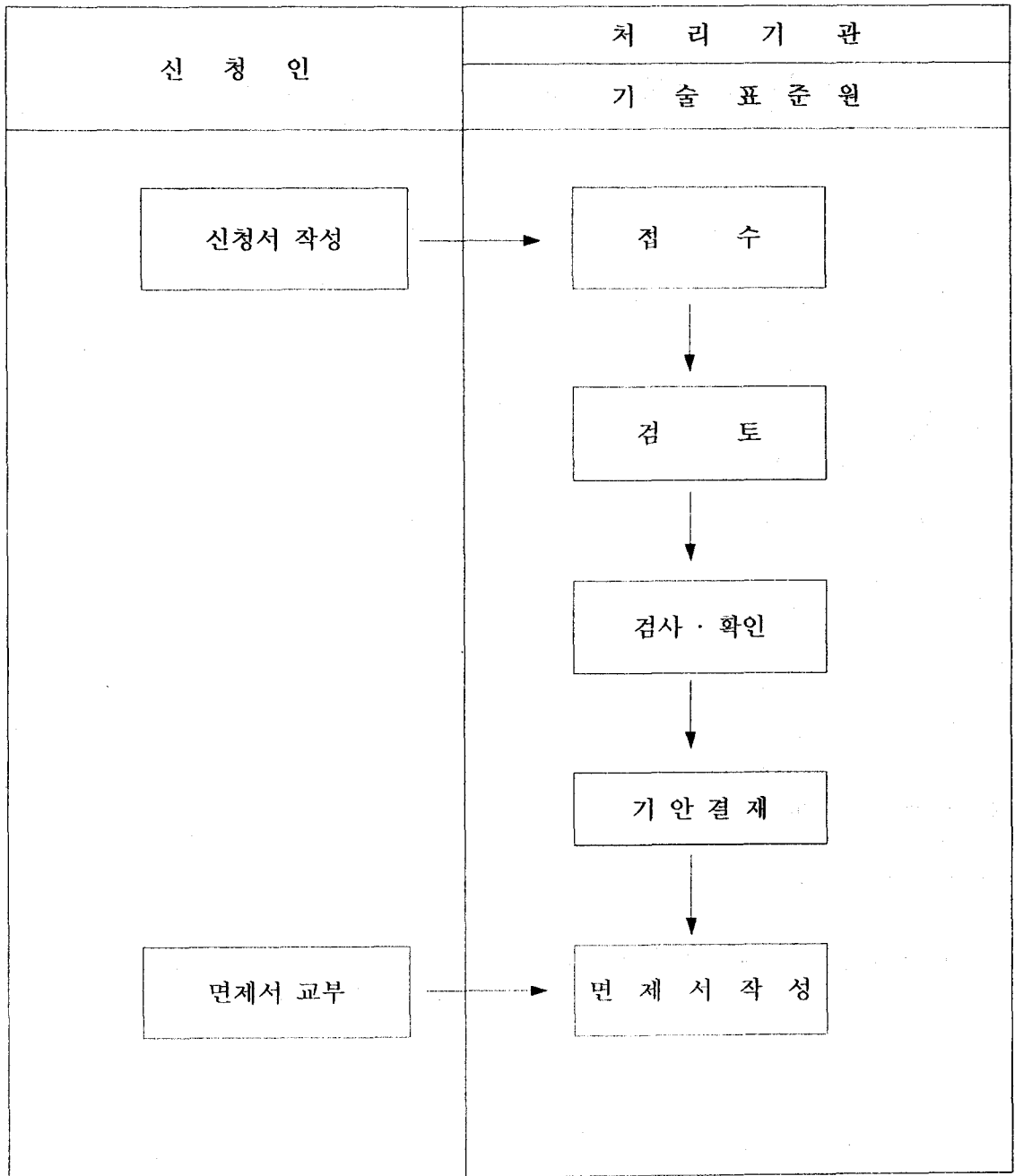
기술표준원장

<b>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검사·확인신청서</b>		처리기간
		확인 : 5일
		검사 : 없음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조사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전기용품	⑦제 품 명	⑧모 델
	⑨정 격	
	⑩구조재질및 성능개요	
	⑪수 량	⑫금 액
⑬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해당조문)		
⑭ 통 관 세 관 명		
⑮ 사 용 장 소		
<p>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서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조자	⑤제조국 (원산지)			
	⑥상 호			
⑦제품명			⑧모델	
⑩정 격				
⑪수 량				
⑫통관세관명				
⑬사용장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 본 면제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제활용품))